

상품요약서

이 상품요약서는 보험약관 등 (무)투자에강한변액연금보험(최저연금적립액 미보증형) 2404의 기초서류에 기재된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보험약관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품의 특이사항

Q. 무배당 투자에강한변액연금보험(최저연금적립액 미보증형) 2404의 특이사항은 무엇인가요?

- A. 이 계약은 최저연금적립액 미보증형으로 최저연금적립액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최저연금적립액이란, 연금개시나 이 계약해당일에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계약자적립액을 말합니다.

Q. 사망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은 왜 변동이 됩니까?

- A. 이 보험은 장기노후생활자금 확보가 주목적인 연금형 변액상품으로 연금개시전에는 계약자적립액(보험계약대출금액 제외)이 특별계정에서 운용되어 사망보험금 및 해약환급금이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합니다. 다만,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이 악화될 경우에도 사망시점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로 사망보험금을 최저보증해 드립니다.

Q. 연금개시시점에 지급받는 연금은 어떻게 계산됩니까?

- A. 연금개시후에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의 특별계정운용실적으로 적립된 연금지급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Q. 계약자적립액의 중도인출 및 추가납입은 가능합니까?

- A. 계약자적립액의 중도인출 및 보험료 추가납입이 가능합니다. 보험료의 추가납입이 가능하여 고객의 수입현황에 따라 입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보험년도 기준 연 12회에 한하여 계약자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10만원 이상 1만원 단위로 하며, 인출할 당시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한 금액)의 50%를 한도로 하고, 인출 이후에는 적립형의 경우 계약자적립액이 500만원, 거치형의 경우 계약자적립액이 기본보험료의 30%미만의 금액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적은 금액 이내에서 중도인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계약자적립액에서 차감합니다.(다만, 중도인출수수료는 연4회까지 면제됩니다) 다만,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의 총 인출금액은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다만, 특약보험료는 제외)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Q. 해약환급금은 최저보증이 되나요?

- A. 변액보험은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해약환급금은 변동할 수 있으며, 최저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중도 해지시 납입한 보험료의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계약자 책임원칙)

Q. 이 보험은 보험료 할인은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A. 적립형에 한하여 계약자가 납입하신 주계약 기본보험료가 10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주계약 기본보험료를 할인하여 드립니다. 다만, 할인금액은 주계약 기본보험료의 2%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할인조건	할인금액
주계약 기본보험료 100만원 초과 ~ 200만원 이하	주계약 기본보험료 100만원 초과금액의 2.0%
주계약 기본보험료 200만원 초과	주계약 기본보험료 200만원 초과금액의 2.5% + 20,000원

Q. 이 보험에서 가입할 수 있는 갱신형 특약의 자동갱신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1. 계약자가 가입하신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역산하여 15일전까지 해당 특약을 유지하지 않는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해당 특약은 갱신되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약관에서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갱신 전 계약의 연체보험료 및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해당 특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2.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은 주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로 합니다. 다만, 주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피보험자의 100세 계약해당일 전일 이후인 경우에는 100세 계약해당일 전일로 합니다.
3. '1.' 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신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2.' 에서 정한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 특약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4.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 계산하고, 갱신을 할 때의 보험요율을 적용하며, 갱신할 때의 보험요율은 위험률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갱신 전과 다를 수 있습니다. 특약이 갱신되는 경우 회사는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해당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역산하여 30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5. 갱신계약의 특약 보험가입금액은 갱신 전 계약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6. 가입하신 갱신형 특약별 갱신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반드시 해당 특약의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 무배당 투자에강한변액연금보험(최저연금적립액 미보증형) 2404의 노후설계자금은 어떻게 운용되나요?

A. 노후설계자금이란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에 계약자가 선택한 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노후설계자금 지급 신청일' 까지 매월 계약해당일에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을 차감하고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을 말하며,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다만, 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0%~ 50% 까지 5% 단위)이 0%인 경우 노후설계자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 전액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연금연액이 산출됩니다.

Q. 무배당 자유로연금전환특약, 무배당 하모니변액연금전환특약, 무배당 LTC연금전환특약 또는 무배당 6대질병연금전환특약으로 어떻게 전환할 수 있나요?

1.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생존할 때 '①' 내지 '③' 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계약에 한하여, 무배당 자유로연금전환특약, 무배당 하모니변액연금전환특약, 무배당 LTC연금전환특약, 무배당 6대질병연금전환특약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배당 자유로연금전환특약, 무배당 하모니변액연금전환특약, 무배당 LTC연금전환특약, 무배당 6대질병연금전환특약으로의 전환 이후 다시 이 계약으로 변경은 할 수 없습니다.
 - ① 적립형 : 납입기간이 지난 계약 (다만,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계약일부터 10년 이상 지난 계약)
거치형 : 계약일부터 5년 이상 지난 계약
 - ② 전환신청일을 기준으로 해약환급금(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한 금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이상인 계약
 - ③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는 계약
2. 무배당 자유로연금전환특약, 무배당 LTC연금전환특약, 무배당 6대질병연금전환특약의 보험료 및 무배당 하모니변액연금전환특약의 위험보험료는 전환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 계산되며, 종신연금형 연금연액은 전환전계약의 가입시점의 피보험자 나이와 전환 후 연금개시나이에 따라 계산합니다.
3. 무배당 자유로연금전환특약 및 무배당 하모니변액연금전환특약으로 전환할 때에는 전환전계약의 가입시점의 기초서류(사업방법서, 약관, 산출방법서) 및 보험요율을 적용합니다.
4. 무배당 LTC연금전환특약 및 무배당 6대질병연금전환특약으로 전환할 때에는 전환시점의 기초서류(사업방법서, 약관, 산

출방법서) 및 보험요율을 적용합니다.

5. '3' 내지 '4' 에도 불구하고, 무배당 자유로연금전환특약의 종신연금형, 무배당 하모니변액연금전환특약의 종신연금형, 무배당 LTC연금전환특약 및 무배당 6대질병연금전환특약의 연금사망률에 의해 계산되는 연금연액은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전환시점의 연금사망률에 의해 계산된 연금연액」 과 「전환전계약 가입시점의 연금사망률에 따라 계산된 연금연액」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다만, 장기요양 및 6대질병 관련 위험률은 전환시점의 회사가 적용하고 있는 위험률을 적용합니다.)
6. 전환일시금은 「전환신청일 +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한 전환 전 계약의 해약환급금으로 하며, 전환시점은 「전환신청일 + 제2영업일」로 합니다.
7. 전환일시금은 전환시점에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하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동안 계약자적립액에 대한 적립이율은 공시이율로 합니다.
8. 전환 후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의 사망보험금은 「전환일시금의 10% + 사망 당시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으로 합니다.

Q. 무배당 실적배당연금전환특약으로 어떻게 전환할 수 있나요?

- A. 1.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생존할 때 '①' 내지 '③'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계약에 한하여, 무배당 실적배당연금전환특약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배당 실적배당연금전환특약으로의 전환 이후 다시 이 계약으로 변경은 할 수 없습니다.
- ① 적립형 : 납입기간이 지난 계약 (다만,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계약일부터 10년 이상 지난 계약)
거치형 : 계약일부터 5년 이상 지난 계약
 - ② 전환신청일을 기준으로 해약환급금(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한 금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이상인 계약
 - ③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는 계약
2. 무배당 실적배당연금전환특약의 위험보험료는 전환전계약 가입시점의 피보험자 나이와 전환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 무배당 실적배당연금전환특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됩니다.
 3. 무배당 실적배당연금전환특약으로 전환할 때에는 전환전계약의 가입시점의 기초서류(사업방법서, 약관, 산출방법서) 및 보험요율을 적용합니다.
 4. 전환일시금은 「전환신청일 +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한 전환 전 계약의 해약환급금으로 하며, 전환시점은 「전환신청일 + 제2영업일」로 합니다.
 5. 전환일시금은 전환시점에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하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동안 계약자적립액에 대한 적립이율은 공시이율로 합니다.
 6. 전환 후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의 사망보험금은 「전환일시금의 10% + 사망 당시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으로 합니다.

Q. 이 보험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나요?

- A. 변액보험의 주계약은 실적배당형 상품으로서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보험금(최저사망보험금) 및 특약(무배당 실적배당연금전환특약 및 무배당 하모니변액연금전환특약의 경우, 최저보증하는 보험금에 한함)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보호 한도는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 (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이며,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 보험금을 합산하여 1인당 "1억원까지" 입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가입자격요건

1. 보험종류

무배당 투자에 강한 변액연금보험(최저연금적립액 미보증형) 2404

보험의 종류		연금지급형태	
적립형	종신 연금형	보증기간부 (개인계약, 부부계약)	정액형(10년 ~ 40년, 100세 보증)
			체증형(10년 ~ 20년 보증)
			소득보장형(10년 ~ 20년 보증)
	보증금액부	일반형	
자유형			
거치형	종신 연금형	보증기간부 (개인계약, 부부계약)	정액형(10년 ~ 40년, 100세 보증)
			체증형(10년 ~ 20년 보증)
			소득보장형(10년 ~ 20년 보증)
	보증금액부	일반형	
자유형			

2. 보험기간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적립형	계약일부터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거치형	계약일부터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종신연금형: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확정연금형: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확정된 연금지급기간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50년, 60년) 까지 상속연금형: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3.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연금개시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구분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연금개시 나이(Y)	보험료 납입주기
적립형	10년~11년	5년납	만15세 ~ (Y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세	45세 ~ 80세	월납
	12년~14년	5년납, 7년납			
	15년	5년납, 7년납, 10년납			
	16년 이상	5년납, 7년납, 10년납, 11년~(연금개시전 보험기간 - 5)년납			
거치형	5년 이상	일시납			일시납

※ 주피보험자가 남자인 부부계약의 최저 연금개시나이는 48세입니다.

※ 연금지급형태를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로 선택한 경우, 최대 연금개시나이는 “100세-보증지급기간+1” 세 임

4. 보험료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보험료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와 기본보험료 외에 보험료 납입한도에 따라 추가로 납입하는 추가납입보험료로 합니다.

가. 기본보험료

- (1) 적립형 : 매월 20만원 이상
- (2) 거치형 : 일시납보험료 1,500만원 이상

나. 추가납입보험료

(1) 적립형

- ① 월정기 추가납입보험료 : 계약자가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연금개시시점 전까지 매월 기본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에 기본보험료와 함께 정기적으로 납입
- ② 수시추가납입보험료 : 계약자가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연금개시시점 전까지 수시로 납입
- ③ 계약자가 추가 납입할 수 있는 추가납입보험료의 총액(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와 수시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은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납입하기로 약정한 기본보험료 납입총액의 2배 이내로 하며, 계약자적립액의 중도인출이 있을 경우에는 인출금액의 누계를 더한 금액을 포함합니다. 다만, 월정기 추가납입보험료와 수시추가납입보험료의 1회 최저납입금액은 10만원으로 합니다. 1회에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는 경과 기간별로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1회에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 한도

$$= \text{해당월까지 납입할 기본보험료(선납포함)} \times 200\% - \text{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2) 거치형

- ① 기본보험료(일시납보험료) 외에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연금개시시점 전까지 보험료 납입한도에 따라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 ②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는 기본보험료(일시납보험료)의 200%이내이며, 연간(보험년도 기준) 납입한도는 기본보험료(일시납보험료)의 20% 이내로 합니다. 또한, 계약자적립액의 중도인출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에 인출금액의 누계를 더한 금액을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로 합니다.

5. 가입한도

구분	보험가입한도	가입배수
주계약	납입보험료 한도이내	-

※ 세납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만 가입 가능

※ 다만, 주계약 및 특약별 가입한도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적용하며, 기존에 가입한 보험가입내용 및 가입경로 등에 따라 조절될 수 있습니다.

6. 건강진단 여부

이 상품은 피보험자의 기존계약 유무, 나이 및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 등에 의해 건강 진단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보험가입 가능여부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입자격을 제한하는 이유는 보험계약은 사회보장제도와 달리 상법상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사업자의 승낙에 의해 성립되며, 다수의 동질적인 위험을 가진 피보험자들의 경험통계를 기초로 보험료 등이 산출되기 때문에 위험의 동질성 확보와 가입자간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제한사항

1. 상품의 구성

주계약 - 무배당 투자에강한변액연금보험(최저연금적립액 미보증형) 2404

- + 무배당 플러스정기특약 (선택특약)
- + 무배당 재해장해보장특약 (선택특약)
- + 무배당 재해사망보장특약Ⅱ (선택특약)
- + 무배당 재해장해연금특약 (선택특약)
- + 무배당 수술보장특약Ⅲ(갱신형) (선택특약)
- + 무배당 신입원특약Ⅳ(갱신형) (선택특약)
- + 무배당 뇌출혈진단특약 (선택특약)
- + 무배당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 (선택특약)
- + 무배당 말기신부전증진단특약 (선택특약)
- + 무배당 말기간질환진단특약 (선택특약)
- + 무배당 암진단특약Ⅶ(갱신형) (선택특약)
- + 무배당 암수술보장특약Ⅳ(갱신형) (선택특약)
- + 무배당 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Ⅲ(갱신형) (선택특약)
- + 무배당 요양병원암입원보장특약Ⅱ(갱신형) (선택특약)
- + 무배당 어린이보장특약 (선택특약)
- + 무배당 보험료납입면제특약 (선택특약)
- + 무배당 6대질병보험료납입면제특약 (선택특약)
- + 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 (제도성특약)
- + 표준하체인수특약 (제도성특약)
- + 단체취급특약 (제도성특약)
-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제도성특약)
- + 무배당 자유로연금전환특약 (제도성특약)
- + 무배당 LTC연금전환특약 (제도성특약)
- + 무배당 6대질병연금전환특약 (제도성특약)
- + 무배당 실적배당연금전환특약 (제도성특약)
- + 무배당 하모니변액연금전환특약 (제도성특약)
- + 변액보험보험계약대출이용방법변경특약 (제도성특약)
- + 장애인 전용보험전환특약 (제도성특약)

2. 보험금 지급사유 및 보험금부별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아래의 내용은 보험금 지급사유 및 보험금부별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계약

1) 사망보험금

보험의 세목	지급사유	지급금액
적립형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월납 기본보험료의 10배 + 사망당시 연금계약의 계약자적립액
거치형		일시납보험료의 10% + 사망당시 연금계약의 계약자적립액

2) 노후설계자금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계약에 한하여 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연금개시전에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지급사유	지급금액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계약자가 노후설계자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 (다만, 1회에 한함)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에 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주) 1.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은 적립형 및 거치형 약관 제2조(용어의 정의) 제3호 '라' 목의 계약자적립액을 말하며,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이 반영되는 기간 중에는 매일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되기 때문에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이 변경되면 계약자적립액도 변경됩니다.
2. 노후설계자금이란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에 계약자가 선택한 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노후설계자금 지급 신청일' 까지 매월 계약해당일에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을 차감하고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을 말하며,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다만, 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이 0%인 경우 노후설계자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 전액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연금연액이 산출됩니다.
3. 위에서 정하는 '노후설계자금 지급 신청일' 이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에 계약자가 노후설계자금의 지급을 신청한 날을 말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노후설계자금의 지급을 신청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사망일을, 확정연금형의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일을 '노후설계자금 지급 신청일' 로 합니다.

3) 연금

종신연금형(보증기간부, 보증금액부),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중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 연금지급형태 및 연금구성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금을 지급합니다.

①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

- 개인계약

지급사유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보증지급기간까지의 잔여분은 지급)
지급금액	정액형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에 (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나누어 계산 후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한 연금연액 (보증지급기간:10년 ~ 40년/100세)
	보증형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에 (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한 연금연액 · 보증지급기간까지의 연금연액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연액이 계약자가 선택한 체증률(5%, 10%)로 증가하도록 계산 후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 · 보증지급기간 후의 연금연액 : 보증지급기간까지 체증된 연금연액을 기준으로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 (보증지급기간:10년 ~ 20년)
	소득보장형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에 (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한 연금연액 · 보증지급기간까지의 연금연액이 보증지급기간 후 연금연액의 50% 또는 100%를 추가로 지급되도록 계산 후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 (보증지급기간:10년 ~ 20년)

- 부부계약

- 주피보험자

지급사유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다만, 주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보증지급기간까지의 잔여분은 지급)
지급금액	정액형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에 (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나누어 계산 후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한 연금연액 (보증지급기간:10년 ~ 40년/100세)
	보증형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에 (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한 연금연액 · 보증지급기간까지의 연금연액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연액이 계약자가 선택한 체증률(5%, 10%)로 증가하도록 계산 후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 · 보증지급기간 후의 연금연액 : 보증지급기간까지 체증된 연금연액을 기준으로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 (보증지급기간:10년 ~ 20년)
	소득보장형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에 (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한 연금연액 · 보증지급기간까지의 연금연액이 보증지급기간 후 연금연액의 50% 또는 100%를 추가로 지급되도록 계산 후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 (보증지급기간:10년 ~ 20년)

- 종피보험자

지급사유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사망하고 보증지급기간 이후부터 매년 계약해당일에 종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지급금액	주피보험자가 생존할 때 지급될 연금연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연금연액

② 종신연금형 보증금액부

지급사유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다만, 연금개시후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 이미 지급된 연금총액이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에 (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일시금으로 지급)		
지급금액	일반형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에 (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한 연금연액 · 「연금개시 후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 이미 지급된 연금총액이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에 (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이 일시금으로 지급」 되도록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	
	자유형	제1연금기간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에 (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자가 정한 제1연금연액
		제2연금기간	제2연금기간 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나누어 계산 후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한 연금연액

③ 확정연금형

지급사유	연금개시시점에 피보험자가 살아 있는 경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확정된 연금지급기간의 매년 계약해당일에 피보험자의 생존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지급
지급금액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에 (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약자가 선택한 확정된 연금지급기간 동안 나누어 계산 후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한 연금연액 (확정된 연금지급기간 :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50년, 60년)

④ 상속연금형

지급사유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매년 계약해당일에 피보험자가 살아 있을 때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에는 사망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을 지급)
지급금액	· 1차년도 연금연액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에 (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의 1년 후 이자액을 연금개시시점으로 할인한 금액」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연금연액 (다만, '1년 후 이자액' 및 '할인한 금액'은 '연금개시시점의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 · 2차년도 이후 연금연액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에 (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1차년도 연금연액(계약관리비용 포함)을 차감한 금액」에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직전 1년간의 이자상당액

※ 계약소멸사유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부부계약의 경우 주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부부계약의 경우 주피보험자 및 종피보험자 모두)가 사망한 경우 또는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확정연금형에서 확정연금 지급기간이 종료된 경우

(주) 1.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은 적립형 및 거치형 약관 제2조(용어의 정의) 제3호 '라' 목의 계약자적립

- 액을 말하며,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이 반영되는 기간중에는 매일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되기 때문에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이 변경되면 계약자적립액도 변경됩니다.
2. 연금연액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연금연액에 부과되는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3. 연금연액의 계산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의 특별계정운용실적에 따라 적립된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에 (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연금연액도 변경됩니다. 또한,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연금개시시점의 공시이율과 계속 동일한 경우 해당 연도 연금연액은 직전 연도의 연금연액과 동일하나,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한번이라도 변경된 경우 해당 연도의 연금연액은 과거 ‘해당 연도와 동일한 공시이율(또는 최저보장이율)이 적용된 연도’의 연금연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종신연금형 보증금액부(자유형)의 제1연금연액은 공시이율이 변경되더라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4. 이 보험의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에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계약일부터 5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연복리 1.25%, 5년 초과 10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연복리 1.0%, 10년을 초과하는 경과기간에 대하여 연복리 0.5%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5. 연금연액은 매월, 3개월, 6개월로 나누어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6.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의 체증형의 경우에는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한번이라도 변경된 경우 보증지급기간의 실제 연금연액은 계약자가 선택한 체증률(5% 또는 10%)로 계산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보증지급기간 경과 후의 연금연액은 보증지급기간까지 체증된 연금연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3’에도 불구하고, 보증지급기간까지 연금연액의 경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공시이율과 계속 동일하더라도 해당 연도의 연금연액은 직전 연도의 연금연액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7.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의 소득보장형의 경우에는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한번이라도 변경된 경우 보증지급기간의 실제 연금연액은 보증지급기간 이후 연금연액의 50% 또는 100%를 더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3’에도 불구하고, 보증지급기간 이후 최초 도래하는 연금연액의 경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공시이율과 계속 동일하더라도 해당 연도의 연금연액은 직전 연도의 연금연액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8.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의 경우 연금개시후 보증지급기간 중 피보험자(부부계약의 경우 주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보증지급기간 동안 지급되지 않은 연금을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합니다. 다만, 보증지급기간 동안 지급된 연금총액은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에 (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9.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의 경우 보증지급기간 동안 피보험자(부부계약의 경우 주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잔여 보증지급기간의 연금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10. 종신연금형 보증금액부(자유형)의 경우 계약자는 연금개시나이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적립형 및 거치형 약관 제2조(용어의 정의) 제3호의 ‘사’ 목 및 제4호의 ‘라’ 목에서 정하는 제1연금연액과 제1연금기간을 선택해야 합니다. 제1연금기간은 5년이상 10년이하의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제1연금기간동안 지급되는 제1연금연액의 총액은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에 (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의 10%이상 80%이하의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11.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전에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연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시점의 연금사망률 및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에 (1-노후설계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연금연액을 지급합니다.
 12. 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후 확정된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30년, 50년, 60년) 중에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각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30년, 50년, 60년)까지의 미지급된 각 연금을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합니다.
 13. 연금개시후 피보험자가 생존할 때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의 보증지급기간(확정연금형의 경우에는 확정된 연금지급기간) 동안 잔여 보증지급기간(확정연금형의 경우에는 확정된 연금지급기간)의 연금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나. 선택특약 (각 특약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주계약과 달리 일반계정에서 운용됩니다.

※ 각 특약의 피보험자 및 보험기간은 주계약과 다를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 청약서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무배당 플러스정기특약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사망보험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1,000만원

※ 계약소멸사유 : 주계약이 해지되거나 기타 사유로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 보험료 납입면제사유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다만,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는 특약' 으로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또는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② 무배당 재해장해보장특약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재해장해급여금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로 장해분류표 중 3% 이상 100%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원 × 해당 장해 지급률

※ 계약소멸사유 : 주계약이 해지되거나 기타 사유로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 보험료 납입면제사유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다만, '무배당 6대질병보험료납입면제특약' 으로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③ 무배당 재해사망보장특약II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재해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로 사망하였을 때	1,000만원

※ 계약소멸사유 : 주계약이 해지되거나 기타 사유로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 보험료 납입면제사유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다만, '무배당 6대질병보험료납입면제특약' 으로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④ 무배당 재해장해연금특약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재해장해연금 I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80%미만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10년간 매년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250 만원 지급
재해장해연금 II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10년간 매년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500 만원 지급 (다만, 재해장해연금 I 이 지급된 후에 재해장해연금 II 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해장해연금 II 에서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을 뺀 차액을 지급)

※ 계약소멸사유 : 주계약이 해지되거나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 보험료 납입면제사유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다만,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는 특약’ 으로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또는 피보험자가 장애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애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이며 80% 미만인 장애 상태가 되었을 경우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애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 장애상태가 되었을 경우

⑤ 무배당 수술보장특약Ⅲ(갱신형)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수술급여금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1종 수술 : 10만원 2종 수술 : 30만원 3종 수술 : 50만원 4종 수술 : 100만원 5종 수술 : 300만원

- ※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급여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하여만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수술에만 해당되며, 미용성형상의 수술,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피임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 검사(腹腔鏡檢査) 등]은 수술급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 (1~5종 수술분류표)상에 ‘시술개시일부터 60일간에 1회의 급여를 한도로 하여 급여금을 지급하는 수술’ 에서 특약이 갱신되어 시술개시일부서의 기간이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경우, 해당 수술 급여금의 지급은 시술개시일부터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은 주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로 합니다. 다만, 주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피보험자의 100세 계약해당일 전일 이후인 경우에는 100세 계약해당일 전일로 하며,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과 같은 경우에는 이 특약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 ※ 계약소멸사유 : 주계약이 해지되거나 기타 사유로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 ※ 보험료 납입면제사유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다만,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는 특약’ 으로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을 할 때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⑥ 무배당 신입원특약Ⅳ(갱신형)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입원급여금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입원 1일당 1만원

- ※ 1.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한도로 합니다.
- 2.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고 각 입원일수를 더하여 ‘1’ 에 따라 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에 따른 입원이라도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지난후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퇴원 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3. 다음 사항에 의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급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① 정신 및 행동장애에 해당하는 질병
 - ② 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에 해당하는 질병
 - ③ 마약, 습관성 의약품 및 알콜중독으로 입원한 경우
 - ④ 치의보철 및 미용상의 치료로 입원한 경우

- ⑤ 정상임신, 분만전후의 간호 및 검사와 인공유산, 불법유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 ⑥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지 않는 불임수술 또는 제왕절개수술 등으로 입원한 경우
- ⑦ 치료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건강진단으로 입원한 경우

- ※ 계약소멸사유 : 주계약이 해지되거나 기타 사유로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 ※ 보험료 납입면제사유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다만,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는 특약' 으로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을 할 때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⑦ 무배당 뇌출혈진단특약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뇌출혈 진단급여금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뇌출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경과기간 1년 미만	500만원
		경과기간 1년 이상	1,000만원

- ※ 경과기간은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 ※ 계약소멸사유 : 주계약이 해지되거나 기타 사유로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이 특약의 약관에 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 ※ 보험료 납입면제사유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다만,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는 특약' 으로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또는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⑧ 무배당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급성심근경색증 진단급여금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경과기간 1년 미만	500만원
		경과기간 1년 이상	1,000만원

- ※ 경과기간은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 ※ 계약소멸사유 : 주계약이 해지되거나 기타 사유로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이 특약의 약관에 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 ※ 보험료 납입면제사유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다만,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는 특약' 으로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또는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⑨ 무배당 말기신부전증진단특약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말기신부전증 진단급여금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경과기간 1년 미만	500만원
		경과기간 1년 이상	1000만원

- ※ 경과기간은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 ※ 계약소멸사유 : 주계약이 해지되거나 기타 사유로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이 특약의 약관에 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는 발생할 수 없는 경우
- ※ 보험료 납입면제사유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다만,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는 특약' 으로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또는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㉑ 무배당 말기간질환진단특약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말기간질환 진단급여금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말기간질환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경과기간 1년 미만	500만원
		경과기간 1년 이상	1000만원

※ 경과기간은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 계약소멸사유 : 주계약이 해지되거나 기타 사유로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이 특약의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는 발생할 수 없는 경우

※ 보험료 납입면제사유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다만,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는 특약' 으로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또는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㉒ 무배당 암진단특약Ⅶ(갱신형)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암 진단급여금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경과기간 1년 미만	500만원
		경과기간 1년 이상	1,000만원
유방암, 전립선암 진단급여금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암, 전립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각각 최초 1회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경과기간 1년 미만	100만원
		경과기간 1년 이상	200만원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대장점막내암 진단급여금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각각 최초 1회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경과기간 1년 미만	50만원
		경과기간 1년 이상	100만원

※ 경과기간은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이내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암, 유방암 및 전립선암 보장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 유방암, 전립선암, 경계성종양,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대장점막내암에 대한 각각의 진단급여금은 갱신된 보험기간별로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은 주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로 합니다. 다만, 주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피보험자의 100세 계약해당일 전일 이후인 경우에는 100세 계약해당일 전일로 하며,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과 같은 경우 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 계약소멸사유 : 주계약이 해지되거나 기타 사유로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또는 이 특약의 약관에서 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 보험료 납입면제사유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다만,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는 특약' 으로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을 할 때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

합니다.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방암, 전립선암,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및 대장점막내암은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에 한하여 면제하며, 이 특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⑫ 무배당 암수술보장특약Ⅳ(갱신형)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수술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최초 1회	200만원
		2회 이후	3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제자리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제자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30만원	
항암약물치료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함)	최초 1회	90만원
		2회 이후	30만원
항암방사선치료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았을 때(다만,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100만원	
		20만원	
항암약물치료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때(다만,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100만원	
		20만원	

- ※ 암 보장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입니다.
- ※ 수술급여금은 계약이 갱신될 경우 다시 최초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은 주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로 합니다. 다만, 주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피보험자의 100세 계약해당일 전일 이후인 경우에는 100세 계약해당일 전일로 하며,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과 같은 경우에는 이 특약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 ※ 항암약물치료비 및 항암방사선치료비는 갱신된 보험기간별로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 항암약물치료 및 항암방사선치료는 수술급여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 계약소멸사유 : 주계약이 해지되거나 기타사유로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 ※ 보험료 납입면제사유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다만,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는 특약' 으로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을 할 때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⑬ 무배당 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Ⅲ(갱신형)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암직접치료 입원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암의 경우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120일 한도)	3일초과 입원일수1일당 암 5만원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2만원

- ※ 암 보장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 ※ 특약이 갱신되어 입원이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경우에 그 지급일수는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총입원일을 기준으로 1회 입원당 120일을 한도로 하여 계산합니다.
- ※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은 주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로 합니다. 다만, 주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피보험자의 100세 계약해당일 전일 이후인 경우에는 100세 계약해당일 전일로 하며,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과 같은 경우에는 이 특약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 ※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은 보장개시일(암의 경우 암 보장개시일) 이후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약관상 명시된 ‘직접적인 치료’의 정의에 따라 그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지급됩니다. 다만, 약관상 명시된 ‘직접적인 치료’에 해당하더라도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는 이 특약의 보장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계약소멸사유 : 주계약이 해지되거나 기타사유로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 ※ 보험료 납입면제사유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다만,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는 특약’으로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을 할 때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⑭ 무배당 요양병원입원보장특약Ⅱ(갱신형)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요양병원 입원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암의 경우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요양병원에 입원하였을 때(60일 한도)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 ※ 암 보장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 ※ 특약이 갱신되어 입원이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경우에 그 지급일수는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총입원일을 기준으로 1회 입원당 60일을 한도로 하여 계산합니다.
- ※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은 주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로 합니다. 다만, 주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피보험자의 100세 계약해당일 전일 이후인 경우에는 100세 계약해당일 전일로 하며,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과 같은 경우에는 이 특약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 ※ 요양병원입원급여금은 보장개시일(암의 경우 암 보장개시일) 이후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인한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지급됩니다. 다만, 이 경우 암, 갑상선

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 이외의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를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주계약 및 특약에 따른 입원급여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동일한 질병으로 인한 요양병원입원급여금의 경우, 이 특약의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암의 경우에는 암 보장개시일)부터 지급된 요양병원입원급여금의 누적 총 지급일수가 365일을 초과할 때에는 365일을 초과한 날 이후부터 이 특약의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동일한 질병으로 인한 요양병원입원급여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한 질병이 완치된 이후에 해당 질병을 다시 진단받는 경우에는 동일한 질병으로 보지 않습니다.

※ 계약소멸사유 : 주계약이 해지되거나 기타사유로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 보험료 납입면제사유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다만,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는 특약’으로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을 할 때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㉕ 무배당 어린이보장특약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재해장해급여금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재해로 장해지급률이 3% 이상 100%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2,000만원 × 해당장해 지급률	
암 진단급여금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 진단확정에 한함)	경과기간 2년 미만	500만원
		경과기간 2년 이상	1,000만원
경계성종양 진단급여금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 진단확정에 한함)	경과기간 2년 미만	150만원
		경과기간 2년 이상	300만원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진단급여금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또는 제자리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각각 최초 1회 진단확정에 한함)	경과기간 2년 미만	50만원
		경과기간 2년 이상	100만원
수술급여금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1종 수술 : 10만원 2종 수술 : 30만원 3종 수술 : 50만원 4종 수술 : 100만원 5종 수술 : 300만원	
입원급여금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재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다만,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1만원 (3일 초과입원일수 1일당)	
유괴·납치위로금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유괴·납치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100만원	
조혈모세포이식 수술급여금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 받았을 때 (다만, 최초 1회 수술에 한함)	경과기간 2년 미만	250만원
		경과기간 2년 이상	500만원

※ 경과기간은 계약일을 기준일로 하여 계산합니다.

※ 다음 사항은 입원급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① 정신 및 행동장애에 해당하는 질병
- ② 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에 해당하는 질병
- ③ 마약, 습관성 의약품 및 알콜중독으로 인한 경우
- ④ 치의보철 및 미용상의 처치로 인한 경우
- ⑤ 정상임신, 분만전후의 간호 및 검사와 인공유산, 불법유산 등으로 인한 경우

⑥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지 않는 불임수술 또는 제왕절개수술 등으로 인한 경우

⑦ 치료를 수반하지 않는 건강진단으로 인한 경우

※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급여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하여만 수술급여금 지급. 다만,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수술에만 해당되며, 미용성형상의 수술,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피임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 검사(腹腔鏡檢査) 등]은 수술급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계약소멸사유 : 주계약이 해지되거나 기타사유로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다만, 주계약이 사망보험금 이외의 보험금 지급으로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또는 자녀형의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여 주계약이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이 특약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보험료 납입면제사유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다만,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는 특약’ 으로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2.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경계성종양,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제자리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3.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 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4. 자녀형의 경우 주계약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주계약이 소멸되었을 경우

⑯ 무배당 보험료납입면제특약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보험료 납입면제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경우	주계약 및 주계약에 부가된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면제

※ 계약소멸사유 : 주계약이 해지되거나 기타 사유로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 주계약에 부가된 갱신부 특약의 경우는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⑰ 무배당 6대질병보험료납입면제특약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보험료 납입면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유방암, 전립선암,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또는 대장점막내암 제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 “말기간질환” 또는 “중기이상 만성폐질환” 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주계약 및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

※ 계약소멸사유 : 주계약이 해지되거나 기타 사유로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 일반적인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예시

1.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계약은 1년)이내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계약의 무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 납입 면제된 보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가.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에게 서면으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지 않음.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계약을 무효로 함.

나.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함.

다.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만 15세 미만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에는 ‘나.’에 따라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3.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보험금 부지급 사유

연금개시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나.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라. 보험금지급 사유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2년 이내)

◆ 보험료 산출기초

1. 보장부분 적용이율

Q : 보장부분 적용이율이란 무엇인가요?

A :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과 보험금 지급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하므로 이 기간 동안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데, 이 할인을 보장부분 적용이율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이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내려가고, 낮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무배당 투자에강한변액연금보험(최저연금적립액 미보증형) 2404의 보장부분에 적용한 적용이율은 연복리 2.50%이며, 동 이율은 적립액 및 해약환급금을 보증하는 이율은 아닙니다.

2. 적립부분 적용이율(공시이율)

무배당 투자에강한변액연금보험(최저연금적립액 미보증형) 2404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에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와 운용자산이익률**을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매월 회사가 결정하는 공시이율에 연동되는 상품입니다. 2025년 4월 현재 공시이율은 연복리 2.30% 입니다. 공시이율이 변동될 경우 무배당 투자에강한변액연금보험(최저연금적립액 미보증형) 2404에 적용되는 이율도 변동됩니다.

* 외부지표금리는 국고채, 회사채, 통화안정증권 및 양도성예금증서 등을 고려하여 산출

** 운용자산이익률은 직전 12개월간의 운용자산에 대한 투자영업수익과 투자영업비용 등을 고려하여 산출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홈페이지 상품공시실에서 무배당 투자에강한변액연금보험(최저연금적립액 미보증형) 2404의 사업방법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최저보증이율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부터 5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연복리 1.25%, 5년 초과 10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연복리 1.0%, 10년을 초과하는 경과기간에 대하여 연복리 0.5%를 적용합니다.

4. 적용위험률

Q : 적용위험률이란 무엇인가요?

A : 한 개인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의 일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예측한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위험률이 높으면 보험료는 올라가고, 낮으면 보험료는 내려갑니다.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구분	무배당 예정 경험 사망률	
	남자	여자
20세	0.000370	0.000290
40세	0.000950	0.000620
60세	0.005260	0.002140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연금지급개시나이	예정 경험 개인연금 사망률	
	남자	여자
50세	0.00094	0.00048
60세	0.00150	0.00058
70세	0.00291	0.00104

※ 가입연령 40세 기준

5.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Q :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은 무엇인가요?

A :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이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험료 중 일정비율을 책정한 것을 말합니다.

6. 갱신행 특약의 보험료에 관한 사항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 계산하고 향후 갱신시점의 적용기초율(적용이율,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적용위험률 등) 변동에 따라 인상 또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 배당에 관한 사항

계약자 배당은 배당상품에 한하여 실시를 하며, 무배당 상품은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배당 상품은 배당상품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무배당 투자에강한변액연금보험(최저연금적립액 미보증형) 2404은 무배당 상품으로서 계약자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1. 해약환급금 산출기준 등 안내

Q : 해약환급금은 어떻게 산출되며,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이유는 뭔가요?

A : 우리 에이비엘생명보험주식회사는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에서 해약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에 해지할 때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2. 해약환급금 및 적립액 예시

해약환급금 예시 없음

◆ 모집수수료율

모집수수료란?

모집수수료란 저축성 보험계약 1건당 예정된 모집수수료로서 회사가 상품별 최적사업비 가정에 따라 부가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중 모집인에게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가. 적립형

(작성기준 : 남자40세(65세 연금개시), 기본보험료 월30만원, 20년납)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이후	합계
모집수수료율	1.43%	0.50%	0.48%	0.00%	2.41%

나. 거치형

(작성기준 : 남자40세(60세 연금개시), 일시납보험료 1억원)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이후	합계
모집수수료율	1.20%	0.09%	0.00%	0.00%	1.29%

※ 예시한 모집수수료율은 향후 지급되는 것을 추정한 수치이며, 예시를 위하여 작성하였으므로 판매채널(금융기관 대리점)별로 실제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수수료 안내표 (주계약 기준)

가. 적립형

1) 기본 비용 및 수수료

(기준 : 기본보험료 30만원, 남자 40세, 10년납, 월납, 연금지급나이 60세)

1 ~ 7년		8년 ~ 10년		11년 이후	
8.6% ~ 11.9%		8.8% ~ 10.2%		2.5% ~ 2.7%	
구분	목적	시기	비용		
보험관계 비용	계약체결 비용	매월	7년 이내 : 기본보험료의 6.500% (19,500원) 7년 초과 10년 이내 : 기본보험료의 3.370% (10,110원)		
	계약관리 비용	매월	10년 이내 : 기본보험료의 2.000% (6,000원) ~ 6.667% (20,000원) 10년 초과 : 기본보험료의 2.333% (7,000원)		
	위험보험 료	매월	기본보험료의 0.0790% (237원) ~ 0.3980% (1,194원)		
특별계정 운용비용	특별계정 운용보수	매일	성장형	펀드적립액의	0.0021506849% (연 0.7850%)
			채권형	펀드적립액의	0.0010698630% (연 0.3905%)
			글로벌셀렉트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0.0012602740% (연 0.4600%)
			글로벌이머징마켓혼합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0.0012602740% (연 0.4600%)
			주식혼합형	펀드적립액의	0.0013438356% (연 0.4905%)
			Ko-BRICs주식형	펀드적립액의	0.0013438356% (연 0.4905%)
			BRICs주식형	펀드적립액의	0.0013438356% (연 0.4905%)
			Index혼합형	펀드적립액의	0.0013438356% (연 0.4905%)
			혼합간접형	펀드적립액의	0.0018082192% (연 0.6600%)
			글로벌리츠형	펀드적립액의	0.0023972603% (연 0.8750%)
			토탈리턴글로벌채권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0.0011780822% (연 0.4300%)
			이머징마켓채권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0.0011780822% (연 0.4300%)
			글로벌인텍스리스크컨트롤형	펀드적립액의	0.0018082192% (연 0.6600%)
			K200리스크컨트롤형	펀드적립액의	0.0018493151% (연 0.6750%)
			글로벌다이나믹멀티에셋형	펀드적립액의	0.0018493151% (연 0.6750%)
			밸류고배당주식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0.0012739726% (연 0.4650%)
			중소형Best 주식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0.0012739726% (연 0.4650%)
			글로벌배당인컴주식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0.0014931507% (연 0.5450%)
			인컴앤그로스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0.0014931507% (연 0.5450%)
			유럽배당주식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0.0014931507% (연 0.5450%)
			차이나포커스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0.0014931507% (연 0.5450%)
			인디아포커스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0.0014931507% (연 0.5450%)
			단기국공채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0.0010575342% (연 0.3860%)
베스트국공채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0.0010575342% (연 0.3860%)			
글로벌다이나믹채권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0.0012191781% (연 0.4450%)			
고배당포커스30채권혼합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0.0010821918% (연 0.3950%)			

		네비게이터주식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0.0012739726%	(연 0.4650%)		
		MMF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0.0008643836%	(연 0.3155%)		
		글로벌하이일드채권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0.0007534247%	(연 0.2750%)		
		베트남그로스주식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0.0017273973%	(연 0.6305%)		
		스마트롱숏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0.0017273973%	(연 0.6305%)		
		유럽주식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0.0014383562%	(연 0.5250%)		
		ELS지수연계슬루션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0.0010575342%	(연 0.3860%)		
		글로벌인프라주식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0.0012876712%	(연 0.4700%)		
		월드와이드퀀슈머주식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0.0013561644%	(연 0.4950%)		
		글로벌테크놀로지주식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0.0014383562%	(연 0.5250%)		
		빅데이터국내주식형	펀드적립액의	0.0019863014%	(연 0.7250%)		
		재팬인덱스형	펀드적립액의	0.0015342466%	(연 0.5600%)		
		팀캘린지자산배분C형	펀드적립액의	0.0024260274%	(연 0.8855%)		
		인공지능팀캘린지자산배분형	펀드적립액의	0.0024260274%	(연 0.8855%)		
		미국그로스주식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0.0014383562%	(연 0.5250%)		
		글로벌리치투게더주식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0.0014383562%	(연 0.5250%)		
		코리아인덱스형	펀드적립액의	0.0018493151%	(연 0.6750%)		
		골드	펀드적립액의	0.0011232877%	(연 0.4100%)		
		미국주식인덱스(환오픈형)	펀드적립액의	0.0017547945%	(연 0.6405%)		
		글로벌착한기업ESG	펀드적립액의	0.0017671233%	(연 0.6450%)		
		탑픽스	펀드적립액의	0.0018904110%	(연 0.6900%)		
		미국테크TOP10주식형(환오픈형)	펀드적립액의	0.0015205479%	(연 0.5550%)		
		미국자사주고배당주식형(환오픈형)	펀드적립액의	0.0019876712%	(연 0.7255%)		
		증권거래 비용 및 기타비용	사유발생 시	성장형	펀드적립액의	연	0.3994%
				채권형	펀드적립액의	연	0.0017%
글로벌셀렉트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연	0.1290%		
글로벌이머징마켓혼합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연	0.0128%		
주식혼합형	펀드적립액의			연	0.6673%		
Ko-BRICs주식형	펀드적립액의			연	0.2162%		
BRICs주식형	펀드적립액의			연	0.1363%		
Index혼합형	펀드적립액의			연	0.0250%		
혼합간접형	펀드적립액의			연	0.1132%		
글로벌리츠형	펀드적립액의			연	0.2674%		
토탈리턴글로벌채권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연	0.0900%		
이머징마켓채권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연	0.1258%		
글로벌인텍스리스크컨트롤형	펀드적립액의			연	0.1700%		
K200리스크컨트롤형	펀드적립액의			연	0.2314%		
글로벌다이나믹멀티에셋형	펀드적립액의			연	0.2732%		
밸류고배당주식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연	0.0167%		

		중소형Best주식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연	0.0358%
		글로벌배당인컴주식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연	0.0785%
		인컴앤그로스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연	0.2553%
		유럽배당주식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연	0.2269%
		차이나포커스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연	0.1120%
		인디아포커스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연	0.0434%
		단기국공채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연	0.0021%
		베스트국공채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연	0.0022%
		글로벌다이나믹채권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연	0.0021%
		고배당포커스30채권혼합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연	0.0000%
		네비게이터주식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연	0.0253%
		MMF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연	0.0023%
		글로벌하이일드채권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연	0.0886%
		베트남그로스주식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연	0.0101%
		스마트롱숏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연	0.0000%
		유럽주식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연	0.2854%
		ELS지수연계솔루션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연	0.0032%
		글로벌인프라주식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연	0.1646%
		월드와이드퀀슈머주식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연	0.1797%
		글로벌테크놀로지주식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연	0.0793%
		빅데이터국내주식형	펀드적립액의	연	0.1559%
		재팬인덱스형	펀드적립액의	연	0.0054%
		팀캘린지자산배분C형	펀드적립액의	연	0.2142%
		인공지능팀캘린지자산배분형	펀드적립액의	연	0.2146%
		미국그로스주식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연	0.0765%
		글로벌리치투게더주식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연	0.0996%
		코리아인덱스형	펀드적립액의	연	0.0587%
		골드	펀드적립액의	연	0.2761%
		미국주식인덱스(환오픈형)	펀드적립액의	연	0.2008%
		글로벌착한기업ESG	펀드적립액의	연	0.2811%
		탐픽스	펀드적립액의	연	0.2653%
		미국테크TOP10주식형(환오픈형)	펀드적립액의	연	0.0731%
		미국자사주고배당주식형(환오픈형)	펀드적립액의	연	0.4595%
기초펀드의 보수비용	매일	성장형	펀드적립액의	0.0000000000%	(연 0.0000%)
		채권형	펀드적립액의	0.0002052055%	(연 0.0749%)
		글로벌셀렉트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0.0005136986%	(연 0.1875%)
		글로벌이머징마켓혼합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0.0022438356%	(연 0.8190%)
		주식혼합형	펀드적립액의	0.0000000000%	(연 0.0000%)
		Ko-BRICs주식형	펀드적립액의	0.0001128767%	(연 0.0412%)

			BRICs주식형	펀드적립액의	0.0000569863%	(연 0.0208%)
			Index혼합형	펀드적립액의	0.0002676712%	(연 0.0977%)
			혼합간접형	펀드적립액의	0.0001408219%	(연 0.0514%)
			글로벌리츠형	펀드적립액의	0.0000000000%	(연 0.0000%)
			토탈리턴글로벌채권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0.0012331507%	(연 0.4501%)
			이머징마켓채권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0.0019490411%	(연 0.7114%)
			글로벌인텍스리스크컨트롤형	펀드적립액의	0.0000000000%	(연 0.0000%)
			K200리스크컨트롤형	펀드적립액의	0.0000000000%	(연 0.0000%)
			글로벌다이나믹멀티에셋형	펀드적립액의	0.0000000000%	(연 0.0000%)
			밸류고배당주식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0.0001238356%	(연 0.0452%)
			중소형Best주식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0.0018569863%	(연 0.6778%)
			글로벌배당인컴주식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0.0045145205%	(연 1.6478%)
			인컴엔그로스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0.0021002740%	(연 0.7666%)
			유럽배당주식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0.0024008219%	(연 0.8763%)
			차이나포커스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0.0006624658%	(연 0.2418%)
			인디아포커스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0.0004342466%	(연 0.1585%)
			단기국공채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0.0004191781%	(연 0.1530%)
			베스트국공채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0.0007104110%	(연 0.2593%)
			글로벌다이나믹채권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0.0010358904%	(연 0.3781%)
			고배당포커스30채권혼합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0.0012819178%	(연 0.4679%)
			네비게이터주식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0.0006230137%	(연 0.2274%)
			MMF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0.0002816438%	(연 0.1028%)
			글로벌하이일드채권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0.0022827397%	(연 0.8332%)
			베트남그로스주식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0.0007712329%	(연 0.2815%)
			스마트롱숏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0.0015273973%	(연 0.5575%)
			유럽주식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0.0000000000%	(연 0.0000%)
			ELS지수연계솔루션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0.0009917808%	(연 0.3620%)
			글로벌인프라주식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0.0011712329%	(연 0.4275%)
			월드와이드퀀슈머주식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0.0010967123%	(연 0.4003%)
			글로벌테크놀로지주식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0.0019989041%	(연 0.7296%)
			빅데이터국내주식형	펀드적립액의	0.0000000000%	(연 0.0000%)
			재팬인텍스형	펀드적립액의	0.0000997260%	(연 0.0364%)
			팀켈린지자산배분C형	펀드적립액의	0.0000000000%	(연 0.0000%)
			인공지능팀켈린지자산배분형	펀드적립액의	0.0000000000%	(연 0.0000%)
			미국그로스주식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0.0017038356%	(연 0.6219%)
			글로벌리치투게더주식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0.0004635616%	(연 0.1692%)
			코리아인텍스형	펀드적립액의	0.0000000000%	(연 0.0000%)
			골드	펀드적립액의	0.0000000000%	(연 0.0000%)
			미국주식인텍스(환오픈형)	펀드적립액의	0.0000000000%	(연 0.0000%)

			글로벌착한기업ESG	펀드적립액의	0.0000000000%	(연 0.0000%)
			탑픽스	펀드적립액의	0.0000000000%	(연 0.0000%)
			미국테크TOP10주식형(환오픈형)	펀드적립액의	0.0000000000%	(연 0.0000%)
			미국자사주고배당주식형(환오픈형)	펀드적립액의	0.0000000000%	(연 0.0000%)
연금수령 기간중 비용	연금수령 기간중의 관리비용	연금수령 시	연금연액의 0.5%			
해약공제	해지에 따른 페널티	해지시	아래 도표 참조※			

- 주) 1. 증권거래비용 및 기타비용 : 유가증권의 매매수수료 및 예약결제비용 등 특별계정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 직전 1년(2024.1.1 ~ 2024.12.31)의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추정합니다.
 2. 기초펀드보수비용 : 다른 집합투자증권(기초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부과하는 보수 및 비용을 직전 1년(2024.1.1 ~ 2024.12.31)의 투자비용을 기준으로 추정합니다.
 3. 해당 위험보험료는 투자수익율 2.75%를 가정하여 산출됩니다.
 4. 무배당 투자에 강한 변액연금보험(최저연금적립액 미보증형) 2404은 최저사망보험금보증비용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망보험금(기본보험료의 10배 + 계약자적립액)이 최저사망보험금(주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작을 경우 그 차액에 대한 해당위험보험료를 매월 부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월대체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5. 특별계정 운용보수는 운영보수,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사무관리보수의 합계를 말하며, 상기 포함된 비율을 최고한도로 하여 실제 비용이 부과됩니다.

※ 해약공제액

경과시점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7년이상
해약공제금액(원)	923,143	769,286	615,429	461,571	307,714	153,857	0	0
해약공제비율	25.6%	10.7%	5.7%	3.2%	1.7%	0.7%	0.0%	0.0%

- 주) 해약공제금액은 계약해지시까지의 경과기간에 따라 계약해지시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에서 실제 공제되는 금액입니다.
 주) 해약공제비율은 이미 납입한 주계약 기본보험료 대비 해약공제금액의 비율입니다.

2) 추가 비용 및 수수료

구분	목적	시기	비용
추가납입보험료	계약유지·관리비용	납입시	없음
중도인출수수료	중도인출에 따른 비용	중도인출시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적은 금액

- 주) 연 4회에 한하여 중도인출 수수료를 면제하여 드립니다.

나. 거치형

1) 기본 비용 및 수수료

(기준 : 기본보험료 5,000만원, 남자 55세, 일시납, 연금지급나이 65세)

		1차월	2차월 ~ 15차월	16차월 이후
		2.4%	0.09% ~ 0.09%	0.03% ~ 0.04%
구 분	목 적	시 기	비 용	
보험관계 비용	계약체결 비용	매월	1차월 : 기본보험료의 1.380% (690,000원) 2차월 ~ 15차월 : 기본보험료의 0.060% (30,000원)	
	계약관리 비용	매월	1차월 : 기본보험료의 1.000% (500,000원) 2차월 이후 : 계약자적립액의 0.030% (최대 일시납보험료의 0.05%)	
	위험보험 료	매월	기본보험료의 0.0028% (1,392원) ~ 0.0064% (3,182원)	
특별계정 운용비용	특별계정 운용보수	매일	성장형	펀드적립액의 0.0021506849% (연 0.7850%)
			채권형	펀드적립액의 0.0010698630% (연 0.3905%)
			글로벌셀렉트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0.0012602740% (연 0.4600%)
			글로벌이머징마켓혼합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0.0012602740% (연 0.4600%)
			주식혼합형	펀드적립액의 0.0013438356% (연 0.4905%)
			Ko-BRICs주식형	펀드적립액의 0.0013438356% (연 0.4905%)
			BRICs주식형	펀드적립액의 0.0013438356% (연 0.4905%)
			Index혼합형	펀드적립액의 0.0013438356% (연 0.4905%)
			혼합간접형	펀드적립액의 0.0018082192% (연 0.6600%)
			글로벌리츠형	펀드적립액의 0.0023972603% (연 0.8750%)
			토탈리턴글로벌채권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0.0011780822% (연 0.4300%)
			이머징마켓채권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0.0011780822% (연 0.4300%)
			글로벌인텍스리스크컨트롤형	펀드적립액의 0.0018082192% (연 0.6600%)
			K200리스크컨트롤형	펀드적립액의 0.0018493151% (연 0.6750%)
			글로벌다이나믹멀티에셋형	펀드적립액의 0.0018493151% (연 0.6750%)
			밸류고배당주식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0.0012739726% (연 0.4650%)
			중소형Best주식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0.0012739726% (연 0.4650%)
			글로벌배당인컴주식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0.0014931507% (연 0.5450%)
			인컴엔그로스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0.0014931507% (연 0.5450%)
			유럽배당주식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0.0014931507% (연 0.5450%)
			차이나포커스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0.0014931507% (연 0.5450%)
			인디아포커스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0.0014931507% (연 0.5450%)
			단기국공채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0.0010575342% (연 0.3860%)
			베스트국공채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0.0010575342% (연 0.3860%)
			글로벌다이나믹채권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0.0012191781% (연 0.4450%)
			고배당포커스30채권혼합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0.0010821918% (연 0.3950%)
			네비게이터주식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0.0012739726% (연 0.4650%)
MMF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0.0008643836% (연 0.3155%)			

		글로벌하이일드채권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0.0007534247%	(연 0.2750%)
		베트남그로스주식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0.0017273973%	(연 0.6305%)
		스마트통신회사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0.0017273973%	(연 0.6305%)
		유럽주식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0.0014383562%	(연 0.5250%)
		ELS지수연계솔루션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0.0010575342%	(연 0.3860%)
		글로벌인프라주식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0.0012876712%	(연 0.4700%)
		월드와이드퀀텀주식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0.0013561644%	(연 0.4950%)
		글로벌테크놀로지주식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0.0014383562%	(연 0.5250%)
		빅데이터국내주식형	펀드적립액의	0.0019863014%	(연 0.7250%)
		재팬인덱스형	펀드적립액의	0.0015342466%	(연 0.5600%)
		팀챌린지자산배분C형	펀드적립액의	0.0024260274%	(연 0.8855%)
		인공지능팀챌린지자산배분형	펀드적립액의	0.0024260274%	(연 0.8855%)
		미국그로스주식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0.0014383562%	(연 0.5250%)
		글로벌리치투게더주식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0.0014383562%	(연 0.5250%)
		코리아인덱스형	펀드적립액의	0.0018493151%	(연 0.6750%)
		골드	펀드적립액의	0.0011232877%	(연 0.4100%)
		미국주식인덱스(환오픈형)	펀드적립액의	0.0017547945%	(연 0.6405%)
		글로벌착한기업ESG	펀드적립액의	0.0017671233%	(연 0.6450%)
		탑픽스	펀드적립액의	0.0018904110%	(연 0.6900%)
		미국테크TOP10주식형(환오픈형)	펀드적립액의	0.0015205479%	(연 0.5550%)
미국자사주고배당주식형(환오픈형)	펀드적립액의	0.0019876712%	(연 0.7255%)		
증권거래 비용 및 기타비용	사유발생 시	성장형	펀드적립액의	연 0.3994%	
		채권형	펀드적립액의	연 0.0017%	
		글로벌셀렉트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연 0.1290%	
		글로벌이머징마켓혼합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연 0.0128%	
		주식혼합형	펀드적립액의	연 0.6673%	
		Ko-BRICs주식형	펀드적립액의	연 0.2162%	
		BRICs주식형	펀드적립액의	연 0.1363%	
		Index혼합형	펀드적립액의	연 0.0250%	
		혼합간접형	펀드적립액의	연 0.1132%	
		글로벌리츠형	펀드적립액의	연 0.2674%	
		토탈리턴글로벌채권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연 0.0900%	
		이머징마켓채권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연 0.1258%	
		글로벌인덱스리스크컨트롤형	펀드적립액의	연 0.1700%	
		K200리스크컨트롤형	펀드적립액의	연 0.2314%	
		글로벌다이나믹멀티에셋형	펀드적립액의	연 0.2732%	
		밸류고배당주식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연 0.0167%	
		중소형Best주식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연 0.0358%	
글로벌배당인컴주식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연 0.0785%			

		인컴앤그로스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연 0.2553%
		유럽배당주식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연 0.2269%
		차이나포커스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연 0.1120%
		인디아포커스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연 0.0434%
		단기국공채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연 0.0021%
		베스트국공채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연 0.0022%
		글로벌다이나믹채권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연 0.0021%
		고배당포커스30채권혼합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연 0.0000%
		네비게이터주식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연 0.0253%
		MMF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연 0.0023%
		글로벌하이일드채권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연 0.0886%
		베트남그로스주식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연 0.0101%
		스마트통신회사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연 0.0000%
		유럽주식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연 0.2854%
		ELS지수연계슬루션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연 0.0032%
		글로벌인프라주식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연 0.1646%
		월드와이드퀀슈머주식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연 0.1797%
		글로벌테크놀로지주식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연 0.0793%
		빅데이터국내주식형	펀드적립액의	연 0.1559%
		재팬인텍스형	펀드적립액의	연 0.0054%
		팀챌린지자산배분C형	펀드적립액의	연 0.2142%
		인공지능팀챌린지자산배분형	펀드적립액의	연 0.2146%
		미국그로스주식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연 0.0765%
		글로벌리치투게더주식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연 0.0996%
		코리아인텍스형	펀드적립액의	연 0.0587%
		골드	펀드적립액의	연 0.2761%
		미국주식인텍스(환오픈형)	펀드적립액의	연 0.2008%
		글로벌착한기업ESG	펀드적립액의	연 0.2811%
		탐픽스	펀드적립액의	연 0.2653%
		미국테크TOP10주식형(환오픈형)	펀드적립액의	연 0.0731%
		미국자사주고배당주식형(환오픈형)	펀드적립액의	연 0.4595%
		기초펀드의 보수비용	매일	성장형
채권형	펀드적립액의			0.0002052055% (연 0.0749%)
글로벌셀렉트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0.0005136986% (연 0.1875%)
글로벌이머징마켓혼합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0.0022438356% (연 0.8190%)
주식혼합형	펀드적립액의			0.0000000000% (연 0.0000%)
Ko-BRICs주식형	펀드적립액의			0.0001128767% (연 0.0412%)
BRICs주식형	펀드적립액의			0.0000569863% (연 0.0208%)
Index혼합형	펀드적립액의			0.0002676712% (연 0.0977%)

		혼합간접형	펀드적립액의	0.0001408219%	(연 0.0514%)
		글로벌리츠형	펀드적립액의	0.0000000000%	(연 0.0000%)
		토탈리턴글로벌채권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0.0012331507%	(연 0.4501%)
		이머징마켓채권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0.0019490411%	(연 0.7114%)
		글로벌인덱스리스크컨트롤형	펀드적립액의	0.0000000000%	(연 0.0000%)
		K200리스크컨트롤형	펀드적립액의	0.0000000000%	(연 0.0000%)
		글로벌다이나믹멀티에셋형	펀드적립액의	0.0000000000%	(연 0.0000%)
		밸류고배당주식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0.0001238356%	(연 0.0452%)
		중소형Best 주식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0.0018569863%	(연 0.6778%)
		글로벌배당인컴주식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0.0045145205%	(연 1.6478%)
		인컴앵그로스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0.0021002740%	(연 0.7666%)
		유럽배당주식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0.0024008219%	(연 0.8763%)
		차이나포커스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0.0006624658%	(연 0.2418%)
		인디아포커스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0.0004342466%	(연 0.1585%)
		단기국공채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0.0004191781%	(연 0.1530%)
		베스트국공채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0.0007104110%	(연 0.2593%)
		글로벌다이나믹채권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0.0010358904%	(연 0.3781%)
		고배당포커스30채권혼합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0.0012819178%	(연 0.4679%)
		네비게이터주식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0.0006230137%	(연 0.2274%)
		MMF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0.0002816438%	(연 0.1028%)
		글로벌하이일드채권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0.0022827397%	(연 0.8332%)
		베트남그로스주식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0.0007712329%	(연 0.2815%)
		스마트롱숏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0.0015273973%	(연 0.5575%)
		유럽주식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0.0000000000%	(연 0.0000%)
		ELS지수연계솔루션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0.0009917808%	(연 0.3620%)
		글로벌인프라주식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0.0011712329%	(연 0.4275%)
		월드와이드퀀텀주식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0.0010967123%	(연 0.4003%)
		글로벌테크놀로지주식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0.0019989041%	(연 0.7296%)
		빅데이터국내주식형	펀드적립액의	0.0000000000%	(연 0.0000%)
		재팬인덱스형	펀드적립액의	0.0000997260%	(연 0.0364%)
		팀챌린지자산배분C형	펀드적립액의	0.0000000000%	(연 0.0000%)
		인공지능팀챌린지자산배분형	펀드적립액의	0.0000000000%	(연 0.0000%)
		미국그로스주식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0.0017038356%	(연 0.6219%)
		글로벌리치투게더주식재간접형	펀드적립액의	0.0004635616%	(연 0.1692%)
		코리아인덱스형	펀드적립액의	0.0000000000%	(연 0.0000%)
		골드	펀드적립액의	0.0000000000%	(연 0.0000%)
		미국주식인덱스(환오픈형)	펀드적립액의	0.0000000000%	(연 0.0000%)
		글로벌착한기업ESG	펀드적립액의	0.0000000000%	(연 0.0000%)
		탑픽스	펀드적립액의	0.0000000000%	(연 0.0000%)

			미국테크TOP10주식형(환오픈형)	펀드적립액의 0.0000000000% (연 0.0000%)
			미국자사주고배당주식형(환오픈형)	펀드적립액의 0.0000000000% (연 0.0000%)
연금수령 기간중 비용	연금수령 기간중의 관리비용	연금수령 시	연금연액의 0.5%	

- 주) 1. 증권거래비용 및 기타비용 : 유가증권의 매매수수료 및 예약결제비용 등 특별계정에서 정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 직전 1년(2024.1.1 ~ 2024.12.31)의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추정합니다.
2. 기초펀드보수비용 : 다른 집합투자증권(기초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부과하는 보수 및 비용을 직전 1년 (2024.1.1 ~ 2024.12.31)의 투자비용을 기준으로 추정합니다.
3. 해당 위험보험료는 투자수익율 2.75%를 가정하여 산출됩니다.
4. 무배당 투자에 강한변액연금보험(최저연금적립액 미보증형) 2404은 최저사망보험금보증비용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망보험금(일시납보험료의 10% + 계약자적립액)이 최저사망보험금(주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작을 경우 그 차액에 대한 해당 위험보험료를 매월 추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월대체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5. 특별계정 운용보수는 운영보수,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사무관리보수의 합계를 말하며, 상기 포함된 비용을 최고한도로 하여 실제비용이 부과됩니다.

※ 해약공제액

경과시점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7년이상
해약공제금액(원)	0	0	0	0	0	0	0	0
해약공제비율	0.0%	0.0%	0.0%	0.0%	0.0%	0.0%	0.0%	0.0%

- 주) 해약공제금액은 계약해지시까지의 경과기간에 따라 계약해지시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에서 실제 공제되는 금액입니다.
- 주) 해약공제비율은 이미 납입한 주계약 기본보험료 대비 해약공제금액의 비율입니다.

2) 추가 비용 및 수수료

구 분	목 적	시 기	비 용
추가납입보험료	계약유지·관리비용	납입시	없음
중도인출수수료	중도인출에 따른 비용	중도인출시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적은 금액

- 주) 연 4회에 한하여 중도인출 수수료를 면제하여 드립니다.